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 4. 5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형유통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적합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함. (안 제7조 제3항)
- 나. “10명”을 “15명”으로 하고, “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대표”로 하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제7호를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제8호를 “시민단체 관계자”로, 제9호를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각각 신설함. (안 제8조 제2항, 제3항)
- 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함. (안 제9조 제1항)

라.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를 신설함. (안 제10조 제2항)

마. “조건”을 “조건(판매품목의 제한, 영업시간의 조정,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함. (안 제15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있도록 추진계획”을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으로 한다.

안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대표
7.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8. 시민단체 관계자
9.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

안 제9조 제1항 중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

안 제15조 제1항 중 “조건”을 “조건(판매품목의 제한, 영업시간의 조정,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p> <p>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종체적 연계를 통하여 마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p> <p>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p> <p>-----</p> <p>-----</p> <p>-----</p> <p>----- <u>있도록 매년 추진계획</u></p> <p>-----</p> <p>-----</p> <p>-----</p> <p>②~④ (원안과 같음)</p>
<p>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② (생략)</p> <p>1.~ 4. (생략)</p> <p>〈신설〉</p>	<p>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② (원안과 같음)</p> <p>1.~4. (원안과 같음)</p> <p>③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p> <p>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1. (생략)</p> <p>2. <u>마포구</u>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p> <p>3.~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7. (생략)</p>	<p>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 <u>15명</u> -----</p> <p>-----</p> <p>③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u>마포구</u> 안의 전통시장 대표</p> <p>3.~6. (원안과 같음)</p> <p>7.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p> <p>8. 시민단체 관계자</p> <p>9.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p> <p>10.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다.</p> <p>② (생략)</p> <p>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p> <p>1.~10. (생략)</p> <p>〈신설〉</p>	<p>제9조(회의 등)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제10조(협의회의 업무) ① -----</p> <p>-----</p> <p>-----</p> <p>1.~10. (원안과 같음)</p> <p>②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p>
<p>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마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p> <p>-----</p> <p>-----</p> <p>----- 조건(판매품목의 제한, 영업시간의 조정,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p> <p>② (원안과 같음)</p>